노무관계

근로관계의 의의

- 근로관계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에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미
- 이를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라고도 말함
-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 의해 원칙으로 성립하지만 그 예외가 있음(사실상 근로관계)
-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

| 구분 | 개별적 근로관계법 | 집단적 노사관계법 |
|-----------|---|--|
| 의의 | -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 관계를 규율 근로계약 체결, 근로관계의 내용, 변경, 종료절차 등에 일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둘중 하나만 청구 | -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를 규율 근로자의 단결을 통한 집단적 방법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|
| 내용 | - 근로계약/취업규칙, 임금/퇴직, 휴일/휴가, 근로시간/휴게시간, 징계/해고, 여성/소년보호, 산업안전/보건 등 | - 노동조합설립/운영, 단체교섭, 단체협약, 쟁의행위/조정/중재, 부당노동행위, 노사협의회 등 |
| 적 용 관계 | -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남녀고용평등법, | 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 |

취업규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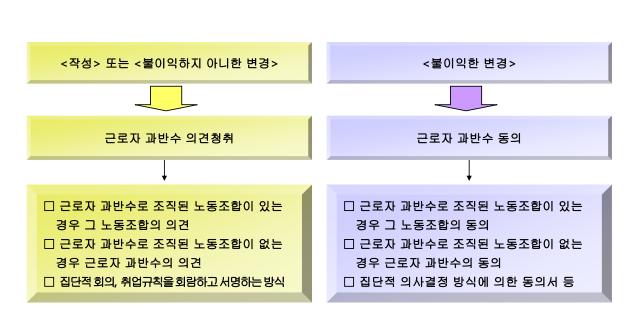
- □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
- □ 명칭에 상관 없음(인사관리규정, 운영규정, 사칙, 인사규칙 등)
- □ 근거: 근기법 제93조
- □ 대상 :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□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가능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

- □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임시직정규직일용직 상용직 등을 총 망라한 상시근 로자수가 1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
- □ 10인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는제외되나 취업규칙을 작성 ů 비치하여야 함.

작성및 변경

5.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



노무법인



근로관계의 유형 무기계약근로자
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한 정년규정을 두고 있음

기간제근로자 •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년을 상한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함

-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7. 7. 1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,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한 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봄.
- 단시간 근로자

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

•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(근기법 제18조)

- 정규근로자

• 근기법 일부 적용 제외(주휴일, 연차유급휴가), 퇴직급여제도고용보험 가입제외 <단, 산재보험은 적용>

1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함

-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1 법정근로시간의 전일제 근로형태
- ①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됨
- 정규근로자의 4가지 항목 중에 한 항목이라도 결여 시 비정규근로자로 판단 (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의 경우 정규 근로자와 차이가 없음)

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

비정규근로자 ●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지휘명령 관계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

● 근로계약기간이 일월년 등으로 정해진 경우

●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영역에 서 제외되는 경우 (특수 고용직)

●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 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

- 근로시간
- 근무시간이란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미포

함(단, 작업을 위한 지휘.감독아래 대기시간은 포함

5인미만 사업장 노무 기준 직원수 = 상시근로자수

"상시근로자수

계산방법 법적용 사유 발생일 한 달 전, 사업장에서 사용한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는 것이다. (**한 달** 동안 사용한 노동자 **연인원**)



팅

(가동일 수)

윤 수 황 노 무 컨 설

2) 연장/야간/휴일 근로 50% 가산 X

1) 법정 근로시간 적용 X (1주 40시간, 1일 8시간)

- 3) 적당한 사유 없이 해고 가능 (30일전 해고 통지는 필요)
- 4) 연차/유급휴가 X

5) 생리휴가 X, 출산휴가 O 6) 퇴직금 O (근속년수 1년 이상 시 30일분 평균 임금 지급)